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30 선고 2023가단5380435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텍 담당변호사 김윤석

피고1. A 주식회사

2.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원, 이예지

변론 종결2024. 9. 4.

판결 선고2024. 10. 30.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2,950,774원과 그 중 202,950,646원에 대하여 2023. 8. 17.부터 2024. 2. 20.까지는 연 8%,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22. 10. 12.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 주식회사에게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22. 10. 12. 접수 제7384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대위변제 등

1) 원고는 2022. 9. 2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원금 2억 원, 보증기한 2026. 9. 21.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피고 회사는 같은 날 C 주식회사(이하 'C은행'이라 한다)에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2억 원의 일반운전자금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을 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보증채무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돈과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데 지출한 비용, ③ 원고가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를 보전, 이전 및 행사하는데 지출한 비용, ④ 미납한 보증료, 추가보증료, 연체보증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피고 회사는 2023. 4. 22.부터 이 사건 대출채무의 변제를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원고는 2023. 8. 17.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은행에 203,538,354원을 대위변제하였고, 같은 날 위 대위변제금 중 587,708원을 회수하였는데 2022. 1. 1. 이후 위 구상금채무의 약정지연손해금율은 연 8%이다.

나. 피고들 사이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1) 피고들은 2021. 7. 19. 피고 회사가 피고 B으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차용하되 이를 2021. 12. 20.부터 2046. 11. 20.까지 300개월간 매월 20일에 균등 분할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2) 피고들은 2022. 10. 12. 피고 회사의 위 1)항 기재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약정한 다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피고 B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22. 10. 12. 접수 제73846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유일한 자산으로 시가는 1,313,860,200원가량이었고, 채권최고액 1,032,000,000원인 채권자 주식회사 D은행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4)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소극재산으로는 ① C은행에 대한 200,000,000원가량의 대출금채무, ② D은행에 대한 1,060,000,000원가량의 대출금채무, ③ E카드에 대한 77,709,033원가량의 채무, ④ F에 대한 45,293,762원가량의 채무, ⑤ 주식회사 G에 대한 43,000,000원가량의 손해배상채무 등 적어도 합계 1,426,002,795원가량의 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나7,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구상금으로 잔존대위변제금 202,950,646원(= 203,538,354원-587,708원)에 원고가 회수한 587,708원에 대한 회수 당일의 확정지연손해금 128원(587,708원 $\times$ 0.08 $\times$ 1/365, 원 미만 버림)을 더한 202,950,774원과 그 중 202,950,646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3. 8. 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4. 2. 20.까지는 연 8%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계약이 체결될 당시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한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발생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회사가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대출받은 채무의 이행을 대출일로부터 불과 7개월가량 지나 연체하기 시작한 점 등을 볼 때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원고가 2023. 8. 17. 피고 회사의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회사의 유일한 자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313,860,200원가량인 반면, 확인되는 채무는 1,426,002,795원가량으로 피고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피고 회사가 피고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B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행위가 피고 회사의 사업자금 유통을 위한 신규대출 등 필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피고 B에 대한 기존 일반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전에 발생한 피고회사의 채무로 인해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가압류까지 마쳐진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 회사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B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에 대한 투자 권유를 받아 피고 회사를 전망 있는 회사로 인식하였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가 충분히 확보되어 채권자들을 해한다고 인식할 수 없었으며, 당시 피고 회사의 구체적인 재산 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 B이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관한 추정이 반복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위 추정을 반복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주옥

별지